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23 No. 6, pp. 75-79, June 2018
www.ksci.re.kr
https://doi.org/10.9708/jksci.2018.23.06.075

Internet comment manipulation and criminal responsibility

Ju-Il L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spect again the role of the criminal law at a time when it is said that numerous criminal and legal discussions are needed to develop the so called "reply manipulation " case that is shaking the nation's political history. The research method considered the literature and precedents discussed in the past, and discussed the issue of subculture abuse caused by the internet, which is a product of convenience and affluence that came with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through criminal law. Through a computer program, a discussion was held on what penalties would be imposed on the criminal law for attempting to manipulate public opinion by manipulating the so-called number of comments or Reaction. Question of whether the criminal law should further emphasize the need for a discussion on the need for a method to strengthen the preventive functions of the criminal law and expand the scope of punishment in order to address new causes of risk that came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Without reflecting on whether such as "government-inspired demonstration "would be possible in today's world that was in the public perception of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of the past, it is a problem to see that the political goals of a particular group can be achieved by manipulating comments or creating public opinion on the Internet. The duty of criminal law i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law. The role of the criminal law should be maintained the self limiting as far as possible in cases of violation or danger of the law. Still, it is a problem that the role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oday is too aggressive and is seen as a top tool rather than a last resort for solving problems. he role of the internet will be expanded further in the Hyper Connected society. To solve these problems, we should look forward to a change in the priority of other laws and policies other than criminal law.

▸Keyword: criminal punishment, technological innovation, convenience, criminal law, comment manipulation

I. Introduction

인터넷의 보급은 인간 세상에 존재하던 시간적, 공간적 거리를 혁신적으로 통합하고 생활의 편리함과 윤택함을 가져다주는 기술혁신은 우리의 삶을 질을 고도화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보의 바다라 명명된 인터넷의 공간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누릴 수 없었던 편리함을 도구로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소통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 인터넷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정보는 손쉬운 공유의 방법을 만들어 내고 이러한 초연결사회의 도래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이른바 '댓글 조작'이라는 하위 문화적 형태의 사건이 발생하여 다양한 형태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기존의 여론을 형성할 수단의 제약으로 인하여 파급력이 존재한다고 하야도 시간적인 제약성과 공간적이 제약성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정보의 무한생산과 무한반복성을 통하여 특정한 의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여론형성이 가능해지고 있다. 상상하기 어려운 초연결된 여론형성의 광장이 되고 있다. 시민의 일반의지의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고대 그리스

• First Author: Ju-Il Lee, Corresponding Author: Ju-Il Lee
*Ju-Il Lee (leejuil@silla.ac.kr), Dept. of Public services, Silla University
• Received: 2018. 06. 04, Revised: 2018. 06. 15, Accepted: 2018. 06. 21.

의 광장민주주의의 시대의 도래를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도 많은 점이 사실이다.

편리함의 그늘에는 오남용의 그림자가 길어지게 마련이라는 것은 사람 사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우리 삶의 풍요와 편리함에 대한 다양한 법리적 검토가 이루어 지고 있다. 우리는 여론조작에 관여한 국가기관이나 공적인 기관의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인정되어 법적인 처분을 받고 있음을 보고 있다. 이것은 마치 권위주의 정부시절의 관제데모를 통하여 여론의 혼돈을 초래하였던 것과는 비교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자신을 지지하는 정당이나 지지자를 위한 여론의 형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형태와는 다른 새로운 과학기술을 활용한 범위나 정도를 규명하기 불가능한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위험원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 되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이른바 드루킹사건을 계기로 수많은 매체와 전문가집단으로부터 형사처벌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업무방해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형법의 역할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적 문제를 검토해보고 이러한 현대사회의 새로운 위험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형법의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반성적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통하여 형법의 역할에 대한 제고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II. Criminal legal debate

1. Essence of obstruction of business

형법 제314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 한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에서 알 수 있는 공통점은 업무방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람의 업무라는 것이다. 업무방행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는 사람의 경제생활의 안전이라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여기서 업무방해죄는 어떤 가치를 보호할 것인가에 대하여 신용, 경매와 같은 장에 편제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재산적 가치를 보호를 본질로 하면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기업활동인 업무와 경제활동에 필요한 신용과 기업이 행하는 경매와 입찰 등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법이라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업무방해죄가 생겨난 배경 자체가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업무를 경제적 활동에 국한하는 것은 오늘날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질서에서 타당성이 높지 않다 할 것이다. 인간의 사회생활상의 지위는 인격으로 발현되어 지고 이러한 인격적 발현의 토대 위에 경제적 활동은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사람의 인격적 발현인 사회적 활동의 자유를 경제적 측면서서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위계를 통하여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기게 하고 이를 통하여 잘못된 처분을 하게 하였다면 성립을 논의할 수 있다. 기존의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법원의 판단이나 학설은 업무방해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이해하고 처벌의 과잉을 초래하고 있다. 근대적 자본주의 경제활동을 보호한다는 것은 기업가를 보호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는 측면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사회경제적 활동의 범위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업무방해죄에서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적극적 논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신중성이나 제한성이 강조되는 것이 오늘날의 업무의 다양성와 복잡화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제한성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Computer crime of Business interrupt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정보화 사회의 출현과 함께 사람들이 일일이 신체적 작업을 수행하던 것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가 사람의 업무를 광범위하게 대신하게 되면서 사람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컴퓨터등 정보처리 장치에 대하여 대량화 신속화를 통하여 광범위한 업무의 방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1995년 신설되었다. 비밀번호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컴퓨터가 대신하던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고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가 발생하거나 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형법적 보호가치에 대한 것은 여전히 사람의 업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형법의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에 대한 논의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단지 광범위한 대량의 업무의 방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서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을 두었지만 정보처리 등의 방해를 통하여 사람의 업무가 방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에서 단순히 댓글을 조작하는 방법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업무의 방해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업무가 반드시 직무나 영업행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법상 반드시 보호할 가치가 존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의 사회생활상의 기반을 형성하는데 평온함을 유지하는데 어떠한 문제를 야기하고 위험성을 초래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엄격한 심사를 하는 것이 필

요하다 할 것이다. 과학적 수단을 활용한 댓글조작을 통하여 실제로 어떤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지금까지 업무방해는 노동자의 권리인 정당한 파업을 제한하는 논리를 제공하는 판결의 역할이 있었다는 점에서 성찰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잘못된 정보를 투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람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형사법적인 접근은 바람직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3. Cyber Defamation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며, 공동체에서 일정한 가치를 향유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생활상에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토대로 하여 천부인권으로서 보호되는 가치가 마땅히 있는 것이다. 이를 내적인 명예라 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다양한 지위와 가치를 보호받고 있다, 이는 인간의 존엄과 천부인권에 기초한 내적명예를 토대한 외적인 명예라 하고 이를 명예훼손죄에서 보호하는 가치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명예의 가치의 보호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헌법상 가치를 토대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가치와 언제나 갈등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가 되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익명성이라는 대단한 무기를 바탕으로 하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치던 대나무 숲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대한 담론의 광장이 생겨났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개인의 명예를 잘 보호하기 위한 방법론적한 균형점을 찾는데 집중하여 왔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컴퓨터 관련 범죄의 유형은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인식되는 명예훼손죄는 실제로 반의사불벌죄로 처벌하는 규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는 많은 발생건수에도 불구하고 형사절차적 통제를 최소한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정보통신망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의 경우 타인이 명예를 훼손하여도 비방의 목적이 없으면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늘 사용하는 일반화된 공식인 개별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판단한다는 애매한 표현을 하여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양산하고 있다. 비록 익명성이 보장된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개인의 명예나 인격은 최소보호의 원칙이 지켜질 것이 요청 되어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인터넷의 발달은 강력한 전파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기억은 지워지기 어렵다는 다. 문제는 댓글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대량의 댓글을 통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명예훼손을 형법상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이용하여 대용량의 댓글이나 공감을 표시한다는 사실이 특정인의 개인적 인격의 해칠 가능성이 존재하는 지에 대하여 고민이 필요하다. 오늘날 인터넷의 발전은 급속한 전파가능성이라는 이유로 인하여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메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량의 댓글이나 SNS 등을 통하여 사람들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의 정도가 파급력을 가질 것이라는 점에서는 인지할 수 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공연성을 증명하는 것이 용이하고,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파급력을 가졌다고 하여도 이를 형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형법의 역할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명예훼손의 경우 외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지만 주관적인 내적 명예감정에 대하여 실제로 이를 엄밀하게 구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명예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인간의 평등적 가치를 훼손하는 도구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공정성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별론하여도 사람의 노동력을 대신하는 단순 반복적 목적으로 시작된 메크로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더욱 발전을 할 가능성이 농후해 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논의를 지속하는 것은 추상적 위험범의 확대를 초래할 것 자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접근 방식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터넷 공간은 과학의 발전과 함께 더욱 진전되고 편이성을 가지고, 유용한 도구화의 역할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기존이 형법의 틀안에서 예방하려는 노력은 형법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문제로 인하여 형사법적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댓글 조작을 통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의 시민정신과 동일한 선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의 시민정신은 그러한 조작된 사실이나 과장된 사실에 놓여 있다고 하여 자신의 신념이나 생각을 쉽게 바꿀 수 있을 것이라 받아들이기 힘들다. 고무신, 막걸리 한잔으로 표를 구하던 시절과 달라졌다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형사법적인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이지 다른 법을 통한 법적 가치의 보호는 필요하다.

II. Critical approach to the role of criminal law

인터넷의 대표적 오남용의 사례라 할 수 있는 댓글조작사건은 계기로 우리나라의 언론이나 당국자들의 문제해결 방식은 규제에 또다른 규제를 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특정한 목적성에 기반하여 치밀한 준비과정을 통하여 메크로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목적으로

하는 매체의 순위를 조작하거나, 삭제하거나 위치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하여 특정 집단의 영리적 또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행위는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 4차산업혁명에서 말하는 초연결사회, 인공지능과 결합된 소프트웨어의 발달은 너무도 자명한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 상의 문제는 플랫폼의 신뢰를 저하기 시키거나 자유시장경제의 교란을 초래할 위험은 있을 지라도, 그것이 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계에 해당하거나, 정보처리의 실질적 장애를 초래하는 등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할 것이다. 인터넷 댓글의 발달과 함께 가져온 편리함과 편리함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부정적인 가치는 우리의 예상을 벗어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이를 형사처벌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형법의 기능을 과거의 자기제한성을 버리고 형벌의 조기화 내지는 전치화하려는 시도를 하여 문제해결을 접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최후수단인 형사법의 조기도입을 통하여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의 논이 방향이라 보기도 어렵다. 현대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편적 법익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추상적 위험범의 확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형법의 역할이 과연 문제해결의 최후수단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 정치적 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형법의 임무는 법익의 보호에 있는데 보편적 법익의 확대는 실제로 구체화 가능성이 낮은 가치를 형법이 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도덕이나 윤리적인 해결책을 형법의 보호의 가치속으로 가져오는 것은 법익보호라는 형법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시민의 인식속에 혼재하고 있는 비형법적인 요소로 잘못 채워질 수도 있다는 위험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인터넷에서 여론의 조작이라는 것이 프로그램이나 조작된 정보나 허위의 정보를 통하여 여론조작이 근본적으로 가능한 세상인가에 대한 반성 없이 무분별할 입법을 통하여 형사법적인 통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많은 권한을 가진 공적인 기관이나 사람들에 의하여 자행되는 인터넷댓글조작행위는 근본적으로 보호법익에 대한 형법의 기본적인 보호가치를 너머 특별한 의무의 침해가 있으면 범죄의 성립을 논의할 수 있다고 하는 의무범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형사법적 문제해결은 근본적으로 최후수단이어야 한다. 더욱이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말하는 인공지능 로봇의 등장은 스스로 인식하는 능력과 스스로 상황판단을 하는 능력, 그리고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터넷여론조작이 발생하게 된다면 형사책임을 누구의 책임으로 부담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들어가면 이 문제는 결코 지금의 땜질식 해결책의 제시로 극복되기 어려운 문제를 지닐 것이다.

IV. Conclusions

이른바 드루킹 사건은 인간의 편리성을 위하여 제작된 프로그램을 도구로 활용하여 댓글조작 혐의가 드러났다. 과학의 발달, 인터넷의 발달이 가져온 편리성과 유용성의 이면에 있는 법익침해의 위험성은 일정한 부분 형사법적으로 수인의 한계를 두고 있다. 이를 허용된 위험이라 말한다.이러한 법원리를 우리는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의 진척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편리성과 유용성이 초래할 위험의 수인의 한계를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그저 당면한 문제를 이슈화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땜질식 처방을 제시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형사처벌이 손쉬운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사회구성원의 공동생활을 위한 현실적 필요성이라는 기본적 요소와 법익보호 수단으로서의 형법이라고 하는 형법의 특징과 합쳐보면 형사정책적 원칙을 명시적으로 정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형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수단의 적절성의 원칙” “상대적으로 가장 온화한 수단의 원칙” “우월적 이익의 원칙”등이 배려되어야 한다. 본 사안에 대한 임시방편적 규제가 아닌 본질적 문제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형사법적인 법익보호를 위한 접근이 아닌 다른 법을 활용한 문제해결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문제등을 검토하고, 책임의 주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선행되기를 기대한다. 최후수단인 형사법의 적극적 검토에 앞서서 다른 법적 보호수단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 검토하는 법문화의 아쉬움이라 할 것이다.

REFERENCES

[1] kang Gu jin, Duties in obstruction of business. Gosigye, 26 (3), 23-28.

[2] Kim Jong Duk (2012).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Constitution to Prevent the Work of Camouflage Employment. Law Studies, 47, 151-170.

[3] Lee, Jae-Sang (2014), Introduction to Criminal Law, Park Young-sa, 207-218.

[4] Park, Sang-ki (2005), The Criminal Law, Park Young-sa. 177-187.

[5] Kwok Byung-Sun(2006) "Regulatory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on Cyber Defamation", Law Research Vol. 23, Korean Law Association, 374-376.

[6] Choi Jung Il (2015), "Analyzing Constitutional

Requirements of Criminal Defamation Crimes and Criminal Law Regulation," Law Research Vol. 23, No. 2, Institute of Law,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09-211.
[7] 2017 Crime White Paper (2018), Legal Training Institute, 151-155.
[8] Yi Inchang(2012), "The Regulations by Criminal Law against any Libel in Cyberspace", Journal of the Korea Computer Information Society, Vol.17, No. 5, 177-183.
[9] Jeong Shin-kyo (2007). Systematic status of risk allowed under criminal law. Legal Studies, 28, 251-266.
[10] Lee Jung Hoon (2012). Criminal Legal Considerations on Online Advertising Attacks. Central Law, 14 (1), 77-110.
[11] Lee Soo-jin (2013). A question of the validity of the obligation and its requirements. Law Studies, 54 (4), 81-104.
[12] Park, Kwang-min and Paik Min-hee (2017). Crime ident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and attribution of criminal responsibility. Law Studies, 20 (4), 153-178.
[13] Ko Kun-Ho, The Judiciary of Permissible Danger, Law, 1990, 3-5.

Authors

Ju-Il Lee received the B.S., M.S. and Dr. Jus. degrees in Criminal law fro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in 1989, 1995 and 2002, respectively Dr. Lee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Public services at Silla University, Busan, Korea, in 2007. He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ublic services at Silla University. He is interested in Computer crime, Cyber Crime, Internet related crime